

제 101 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부록)

거창군의회사무과

목 차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내용 1 면

3. 검토내용

공 통 사 항

○ 사항별 설명서 보완

- 예산심의에 활용할 사항별 설명서상 예산의 산출기초가 되는 사업량, 대상지역, 대상자, 자부담 등 구체적인 세부사업개요가 없이 작성되어 있음

⇒ 사업예산(신규)의 세부사업내역 제출(예산심의 3일 전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1. 명시이월변경사업조서 (p335)

- 농경지 수해복구 집행잔액을 하천 수해복구 사업비로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사항임

- 농수산개발(관) 농수산개발(항) : 1,047,847천원(국비 1,009,184 포함)

⇒ 국토자원보존개발(관), 건설관리(항)로 변경

【검토내용】

- 명시이월비는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에 의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월된 예산은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서
-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취지를 명시하여 지난해 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인 것을 그 다음연도에 와서 지난해 예산을 다시 변경하여 의결할 수 없다고 보며,

- 이 경우는 올해 예산의 수정, 변경이 아니고 지난해 예산의 과목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 스스로도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봄.
※ 행정자치부, 경남도청 예산부서 질의답변 결과임.
- 처리방안 : “명시이월변경사업조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결치 않기로 주문해야 할 것으로 봄.

《산업과 소관》

1. 벼 병해충 공동방제 (p183)

-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 93,900,000원 계상되었으나 국·도비 변경 내시로 △ 30,810,000원이 삭감되어 63,090,000원으로 변경되었음
- 자체사업으로(사항별 설명서 p185)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로 41,130,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음

【검토내용】

- 가.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업량은 3,130ha이며 자체사업의 경우 사업량이 4,570ha로 되어 있는바 병해충 공동방제 대상지역이 각각 다른 것인지?
- 나. 국·도비 보조사업비 삭감에 따른 부족 사업비라면 별도 자체사업으로 계상할 것이 아니라 보조사업에서 균비만 증액하면 가능할 것으로 봄.
- 다. 삭감된 30,810,000원보다 10,320,000원이 추가된 41,130,000원으로 증액한 사유

2. 농협 도정공장 설비지원 (p185)

- 농협에서 직접 운영하는 도정공장은 농민들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있는 자체 수익사업임.
- 농협 자체사업의 보조금 지원은 일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사업과는 같은 성질의 사업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봄

【검토내용】

가.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쌀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도정공장에서만 가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도정공장에서 가공판매가 되고 있는지? 농협에서 가공·판매만 한다면 농민에게 벼 구매값 외에 더 돌아가는 이익이 별도 있는지?

농협에서는 구매·가공·판매에 따른 수익이 전혀 없는 사업인지?

나. 농협에서 전량구매 등 독점사업으로 운영하여 일정한 수익을 남긴다면 사업성질상 융자금으로 지원하거나 보조금 지원액을 조정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 송아지 생산 기지 조성사업 (p187)

- 국고보조사업으로 150,000,000원은 신규 계상되어 있으나 재원중 국비는 세입예산(p39)과 세출예산에도 미 반영되어 있음

【검토내용】

가. 사업에 대한 구체적 설명 필요

나. 산출기초로 보아 전체 사업비, 재원별 부담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다. 국비 보조금이 1억원인 반면 도비 지원 없이 군비를 1억 5천만원을 부담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아니하다고 봄

4. 쪽사료 시범표 조성부지 매입비 (p190)

- 동 사업비는 향토지적 재산형성과 관련된 시상금 형태의 교부세 지원 사업임

【검토내용】

- 공유재산 관리계획(의회승인)의 선행절차 미이행
⇒ 토지매입 계획 등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과 충분한 검토가 요구됨

5.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특산주 개발용역 (p193)

- 학술용역비를 1천만원 증액하고자 함

【검토내용】

- 예산의 증액의 필요성 등 검토가 요구됨

《지역경제과 소관》

1. 『희망21! 선택과 집중』 지역경제분야 실행계획수립용역 (p195)

- 본(당초)예산에 동 사업 명목으로 같은 금액 5천만원이 기 계상되어 있음에도 신규사업으로 추가 계상

【검토내용】

- 가. 같은 사업을 이중 계상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용역 사업인지, 지정 사업비 증액에 해당하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증액의 경우라면 타당성 등 검토가 필요

나. 지정 사업비의 50% 이상 증액 또는 신규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법 및 거창군 투자사업심사규정 제2조 제4호에 의거 용역사업비는 예산에 계상하기에 앞서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절차가 선행되었는지 검토가 요망됨

2. 기업유치 기반조성을 위한 학술용역 (p199)

○ 학술용역비 40,000,000원을 신규로 계상.

【검토내용】

○ 지역경제과 소관 제1항 “나”항과 같이 투자심사 절차가 선행되었는지 검토가 요망됨.

3. 미녀봉 등산로 주변 배수로 정비 (p199)

○ 농공단지 주변지역 범람 방지를 위해 당초예산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같은 명목으로 1천만원을 신규로 계상

【검토내용】

○ 같은 사업을 이중 계상한 것인지, 사업비 증액에 해당하는지 설명과 증액 타당성 검토가 필요함

4. 거창상설시장 내 주차장 설치사업 (p199, p331)

○ 같은 사업에 대해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에 각각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음.

(단위 : 천원)

| 일반회계 | | | 주차장특별회계 | | |
|---------|---------|-------|---------|---------|-------|
| 계 | 시설비 | 시설부대비 | 계 | 시설비 | 시설부대비 |
| 700,000 | 695,590 | 4,410 | 600,000 | 596,220 | 3,780 |

【검토내용】

- 가. 동일한 사업에 회계를 각각 달리하여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한 검토가 요청됨
- 나. 같은 사업장에 회계별 각각의 예산이 투입되어 사업을 시행할 것인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집행상 문제점이 없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 다. 사업비의 대부분이 토지매입비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회승인)에 미 반영된 상태이므로 향후 추진방안 등 설명이 필요
- 라. 회계별 각각 분리되어 있으나 총 사업비가 13억원으로서 투자심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심의를 거친 것인지 또는 심의대상이 아닌지 설명이 필요함

5.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 (p204)

- 버스와 택시의 경우 제1회 추경예산이 당초예산액과 같은 금액을 계상하였으나, 2002년도 집행액은 예산 부기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

(단위:천원)

| 구 분 | 2003년도 예산 | | | 2002집행액 |
|------|-----------|---------|---------|---------|
| | 계 | 당초예산 | 제1회추경 | |
| 계 | 516,610 | 272,723 | 243,887 | 228,776 |
| 시외버스 | 160,304 | 80,152 | 80,152 | 99,126 |
| 농촌버스 | 102,153 | 51,081 | 51,082 | 32,028 |
| 일반택시 | 107,924 | 53,962 | 53,962 | 52,303 |
| 개인택시 | 78,944 | 39,472 | 39,472 | 20,975 |
| 일반화물 | 43,508 | 31,086 | 12,422 | 17,324 |
| 개별화물 | 13,973 | 9,981 | 3,992 | 6,832 |
| 용도화물 | 9,784 | 6,989 | 2,795 | 187 |

【검토내용】

- 가. 동 사업의 취지와 재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나. 실제 집행액과 산출기초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매년 조정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계상하는 이유가 있다면 설명 필요하고, 동 사업은 경유와 가스의 인상분을 계상하여 지원하는 사업임으로 인상된 단가 등을 산출기초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다. 올해 집행할 예산액은 지난해 집행액보다 125% 증액계상한 이유등 구체적인 산출기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6. 시외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 개·보수 (p205)

- o 사유재산 건축물 개·보수에 5천만원을 신규 계상

【검토내용】

- o 버스요금의 일정금액을 받아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유재산 건축물의 개·보수에 5천만원씩 지원하여 화장실을 개선해야 하는 것인 지에 대해서는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추경심의시 재토론하기로 한 사항임.

《산림과 소관》

1. 생활주변나무심기(35천본) (p211)

- o 동 사업비는 당초예산 심의시 군비 910,000,000원인 것을 “예산과다 계상” 사유로 군비 520,000,000원을 삭감 조치한바 있는 사업임

(단위:천원)

| 구 분 | 당초예산요구액 | 기 정 | 제1회추경요구액 | 기정예산대비 |
|-----|-----------|---------|----------|----------|
| 계 | 1,300,000 | 780,000 | 910,000 | 130,000 |
| 도 비 | 390,000 | 390,000 | 273,000 | △117,000 |
| 군 비 | 910,000 | 390,000 | 637,000 | 247,000 |

【검토내용】

- 도비 삭감액 117,000,000원을 군비에서 충당한다 하더라도 추가로 130,00,000원이 더 계상한 것이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타당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함.

2. 논밭두렁 공동소각(470km) (p217)

- 당초예산 심의시 "예산과다 계상"으로 군비 1억원을 삭감한 사업임

(단위:천원)

| 구 분 | 당초예산요구액 | 기정예산 | 변 경 | 기정예산대비 |
|-----|---------|--------|--------|---------|
| 계 | 122,774 | 22,774 | 10,274 | △12,500 |
| 국 비 | 3,082 | 3,082 | 3,082 | 3,082 |
| 도 비 | 2,158 | 2,158 | 2,158 | 2,158 |
| 군 비 | 117,534 | 17,534 | 5,034 | △12,500 |

【검토내용】

- 당초예산 심의시 1억원 삭감으로 축소된 사업임에도 금회 추가로 12,50,000원 더 삭감해도 470km의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함.

《건설과 소관》

1.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p224, p226)

- 보조사업, 시설비 중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가 당초 624,000,000원에서 416,000,000원으로 조정하면서 △ 208,000,000원을 삭감한 반면,

- 보조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당초 312,000,000원에서 208,000,000원을 증액하여 520,000,000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음

【검토내용】

- 가. 동 사업의 경우 연초 사업의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하여 계획된 물량을 도중에 변경하여 추진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 나. 군에서 집행할 사업을 농업기반공사 사업으로 변경 배정하여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변경된 것인지 또, 지역간 균형배분 등이 충분히 고려된 것인지 검토를 요함.

2. 건설관리(항), 보조사업의 시설비와 자체사업의 시설비 등 (p229~p234)

- 동 사업의 산출내역을 검토한 바 남상, 남하, 거창읍 등 12개읍·면 중 5개읍·면을 위한 사업비에 해당됨.
 - 국고보조금 : 24건, 786,000,000원
 - 자체사업(합천댐 지원사업) : 16건, 294,120,000원
 - 민간자본보조 : 4건, 15,930,000원
 - 자산취득비 : 1건, 13,711,000원

【검토내용】

- 가. 동 사업의 추진목적, 총사업비, 5개 읍·면별 총사업비, 그리고 향후 읍·면별 투자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
- 나. 국고보조 및 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된 사업비가 5개 읍·면에만 집중 투자된다고 볼 때, 군 전체의 균형발전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인지?

특정지역 집중투자를 할 경우 그 외 면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됨.

3.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p237)

- 국비 50%, 군비 50% 총 10,000,000원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음.

【검토내용】

- 가. 동 장비의 주요기능과 역할, 전국 연결 가능여부, 재난발생 및 피해 최소화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설명.
- 나. 기존 상황실에 설치된 장비와 별개로 활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호환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다. 정수물품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배정 승인을 받고 예산에 계상했는지 설명이 필요함.

《도시환경과소관》

1. 쓰레기 소각시설 입지 타당성 및 환경성 조사용역 (p243)

- 학술용역비 40,000,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음.

【검토내용】

- 가. 지방재정법 및 거창군 투자심사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전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바 동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함.

나. 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제 3의 장소를 별도 물색하는 것인지? 소각방식에 대한 검토를 하는 단계라면 위치에 대한 타당성이나 설치할 장소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며, 소각시설 견학 결과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내 스토커방식의 소각시설이 입지해 있는 점으로 보아 현재 매립장 내 무공해 플라즈마 방식의 시설을 하는데 입지의 타당성 조사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환경성 검토만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용역비만 계상하면 가능한 것이 아닌지?

2.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리운반 대행료 (p244)

- 당초예산에서 전년도보다 142,000,000원이 증가된 1,679,000,000원을 계상해 주었고, 이를 토대로 2003년도 수거 대행계약을 연초에 체결하였다고 봄
- 당초예산보다 300,270,000원이 추가 계상되어 총 사업비가 1,979,270,000원으로 증액되었음.

쓰레기 수거대행 계약금액

(단위 :백만원)

| 연 도 별 | '97 | '98 | '99 | 2001 | 2002 | 2003 |
|---------|-------|-------|-------|-------|-------|-------|
| 계 약 금 액 | 1,043 | 1,200 | 1,312 | 1,457 | 1,537 | 1,679 |
| 전년대비증가액 | | 157 | 188 | 145 | 80 | 142 |

※ 2003년은 1997년보다 636백만원 증가(추경반영시 936백만원 증가)

【검토내용】

- 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쓰레기 수거 대행계약의 근거가 되는 원가 계산 내역을 제출하도록 한 바 있으므로 동 내역사본과 추가인상에 대한 원가 계산 내역 등을 제출 받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나. 연초 계약 후 추가 인상분 검토를 위해서는 연초계약서 사본도 제출 받아 검토해야 할 것임.
- 다. 인상요인 외에 인하요인이 없는 것인 지와 경쟁계약으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라. 쓰레기 수거비용은 쓰레기를 버리는 원인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서 매년 수거 대행계약금액만 인상할 것이 아니라, 원인자로부터 일정금액을 받아들여 동 재원의 일부로 충당해야 한다고 보며,
6년 동안 인상치 아니한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문제와 쓰레기 봉투 판매 비용의 일부를 인상분에 충당하는 문제 등 인상금액의 적정선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조정해야 할 것으로 봄.
(참고로, 하수도의 경우, 하수도시설의 원인자 부담금은 하수종말처리장 관로매설비, 시설설치비를 전액 원인자로부터 받고 있는 반면, 쓰레기 수거료는 일부분, 약 시·군당 10%에서 20%를 받고있는 실정임)

생활 쓰레기 봉투 가격 비교표(현실화 지역)

(단위 : 원)

| 용 량 | 쓰레기 봉투 가격 | | | | | | | | | | | |
|------|-----------|-------|-------|-------|---------|-----|-----|-----|-------------|-------|-------|-------|
| | 공 급 액 | | | | 판 매 이 익 | | | | 봉 투 판 매 가 격 | | | |
| | 거창 | 마산 | 거제 | 산청 | 거창 | 마산 | 거제 | 산청 | 거창 | 마산 | 거제 | 산청 |
| 5ℓ | 91 | 112 | 136 | 108 | 9 | 8 | 14 | 12 | 100 | 120 | 150 | 120 |
| 10ℓ | 182 | 220 | 227 | 210 | 18 | 10 | 23 | 20 | 200 | 230 | 250 | 230 |
| 20ℓ | 364 | 430 | 455 | 409 | 36 | 20 | 45 | 41 | 400 | 450 | 500 | 450 |
| 50ℓ | 819 | 1,045 | 1,092 | 1,028 | 81 | 55 | 108 | 102 | 900 | 1,100 | 1,200 | 1,130 |
| 100ℓ | 1,638 | 2,100 | 2,275 | 2,000 | 162 | 100 | 225 | 200 | 1,800 | 2,200 | 2,500 | 2,200 |

거창군은 산청군에 비해서 상당히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5ℓ 짜리는 17원, 10ℓ 짜리는 28원, 20ℓ 짜리는 65원, 50ℓ 는 109원, 100ℓ 짜리는 362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납니다.

마산과 거제에 비해서는 더더욱 차이가 많이 납니다.

쓰레기봉투라는 것은 쓰레기 수거수수료를 받는 방법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가격은 쓰레기봉투 인쇄비와 쓰레기 수거비용을 포함해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쓰레기 봉투값은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3. 거창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용역 (p24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평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용역임
- 대상지역은 종전 준농지지역 등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된 193.3km²를 계획·보존·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할 계획임.

【검토내용】

- 가. 용역사업비의 적정성등에 대한 투자심사 절차 선행여부
- 나. 용역비 산정기준 제시 요망 (참고 : 밀양시는 약 160만원 정도).
- 다. 토지의 적성평가를 193.3km²에 대해 전수 조사하는 용역이라고는 하나, 준도시지역(2.4km²)(취락지구, 관광휴양지구, 산업촉진지구, 시설용지지구)는 기 용역을 토대로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며, 준농림지역(190.9km²) 중 농업지대는 96년도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지관리 기금으로 농업진흥지역 안팎 모두 토지의 적성을 조사하여 도면과 용역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그 조사내용을 토대로 군수가 농지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도면과 함께 확정·고시한 바 있으므로 현재 행정 내부에 갖고 있는 자료를 활용한다면 용역기간 단축 및 용역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봄.

라. 토지적성평가를 관리계획 수립용역과 분리하여 시행하는 이유와 통합 발주할 수 없는지 답변이 필요함.

4. 도시계획사업 추진 측량기계 구입(2종) (p246)

- 광파기(전자측량장치) : 1대 17,000,000원
- 자동레벨(레벨메타) : 1대 1,100,000원

【검토내용】

-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장비라고 판단이 되나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검토가 필요함
- 가. 현재까지 동 장비 없이 어떻게 측량 등을 했는지?
- 나. 현재까지 동 장비 임차 등 활용 횟수와 임차비용
- 다. 지적부서 또는 지적공사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임차하여 사용방안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5. 가조종합휴양지사업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p248)

- 동 사업을 위해 당초 80,000,000원을 계상하였다가 금회 1억원을 더 증액하여 총 180,000,000원임.

【검토내용】

- 가. 증액사유 등에 대한 타당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
- 나. 용역비의 50% 이상 증액은 사전 투자심사 대상임으로 절차를 거친바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수도사업소 소관》

1.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 (p263)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을 위한 학술용역비 20,000,000원 계상

【검토내용】

가.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했는지 여부
나. 상수도와 하수도 사업은 2004. 1. 1부터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현재 조례 제정, 자산재평가 등을 추진중에 있고,

또 하수도시설 자산평가를 위해 일반회계에 학술용역비 17,500,000원
상수도시설 자산평가를 위해 상수도특별회계에 학술용역비 17,500,000원을 기 계상한 바 있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자료가 되는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 등 공사비, 설계비, 용지비, 기타 부대비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그 자료는 행정내부에서 모두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을 감안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자산 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면 가능한 사항으로서 별도 용역의 필요성은 없다고 봄.

(산청군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자산재평가를 총예산액 2,5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음. 우리는 이번의 2,000만원과 기존 1,750만원을 합치면 3,750만원이고 산청은 2,500만원만 하면 사업이 가능함. 그래서 우리는 1,250만원이 더 많이 되어 있음)

2. 시가지 우·오수 분리관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p265)

- (경정) 100,000,000원 - (기정) 50,000,000원 = 증 50,000,000원

【검토내용】

가. 사업비 증액의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

나. 용역비 50% 증액에 따른 투자심사 실시하고 예산에 반영했는지 여부